
볼리비아의 다국민국가와 신헌법:

자유민주주의 모델의 한계에 대한 논쟁에서
볼리비아 경험의 시사점

카롤 프로네르

카롤 프로네르(Carol Proner)는 법학박사로 우니브라질(UniBrasil) 법학과 석사과정 코디네이터로 재직 중이다.

우리의 실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 아이마라어를 잘하는 사람, 공동체 논리를 실천하는 사람, 개인주의 논리를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가 환영받는 공간 말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 제도, 문명, 언어의 다양성을 평등한 조건에서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으로 인정하는 다국민국가의 이념이다.

-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 (Alvaro García Linera)

I. 들어가는 말

라틴아메리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운동은 국가 권력과 제도의 변화를 야기하며, 법적으로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주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헌법 제정 과정에 대한 재인식, 헌법에 대한 각성, 정치적·사회적 관계의 재정의를 통한 사회 재구성을 사례로 언급한다.

수많은 저술가나 분석가는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률적·헌법적 변화에서 공통되고 일반적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 이론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를 가리켜 신헌법주의 또는 해방적 헌법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여타 국가의 비효율적인 자유주의 모델 헌법과의 비교에서 생겨나는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선, 우리는 개개의 제헌 과정에서 새로운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점이란 낡은 것과 불합리한 상황을 전복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권리를 무시하고 주체를 억압하는 과정에 감춰져 있는 변혁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실을 주류 이론의 모델에 짜맞추려는 시도에 내재된 위험도 있다. 신헌법주의 등장을 이론화하려는 작업은, 타당하고 인정할 만한 일반 이론, 즉 실험을 거쳐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일반 이론을 정립하려는 시도로 변질되곤 했다. 이러한 일반 이론은,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제헌 과정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또 자유주의 헌법에 만연한 추상적 모델과 비교할 때만이 본질적인 차별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보장을 담고 있는 낡은 자유주의 헌법 모델에 끼워 맞추려고 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신헌법주의는 (볼리비아 헌법과 에콰도르 헌법이 효시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일천하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정치적·사회적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나 개별 국가의 제헌 과정은 고유의 역사를 반영하기 마련이며, 이웃 나라와는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제헌 과정마다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일반 이론을 정립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 왜냐하면(자유 국가에서) 확립된 일반적 이론(과정)과 비교하다 보면(그럴 수밖에 없다)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로베르토 가르가레야(Roberto Gargarella)가 밝히고 있듯이,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보면 적어도 세 가지 유형의 헌법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엘리트주의,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보수주의 헌법이고, 둘째는 반국가중심적이고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며 도덕적으로 중립인 자유주의 헌법이며, 셋째는 정치적 다수주의, 도덕적 용어로는 포폴리즘적인 것으로 가르가레야는 급진적 헌법으로 정의한다(Gargarella 2010: 185).

보수주의 헌법 모델과 자유주의 헌법 모델은 상당 부분 공통되기 때문에 쉽게 뒤섞였다. 하지만 자유주의 헌법 모델과 급진적인 헌법 모델은 많은 점에서 대립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리비아 헌법은, 한편으로는 경제 권력을 가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헌법 모델과 공동체 헌법 모델 및 새로운 다국민국가(Estado plurinacional)¹⁾ 헌법 모델이 결합된 것이며, 이러한 속성은 헌법 조항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볼리비아에서 신헌법을 제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헌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도 1년 4개월이 걸렸다. 다국민국가 창설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헌법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볼리비아에서도 새로운 경험일 뿐

1) 'plurinacional'은 '다민족국가' 또는 '다국민국가'로 옮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편의상 '다국민국가'로 통일한다. 그러나 'nación'은 문맥에 따라 '민족' 또는 '국민'으로 번역한다-옮긴이.

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어떤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신헌법은 다국민국가의 성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볼리비아 내의 각 주(州), 지역, 주민(또는 민족)의 자율과 자치를 인정하며, 이러한 단위(주, 지역, 주민 또는 민족)가 국가와 공동으로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²⁾

볼리비아를 다국민국가로 인정하는 헌법을 제정하겠다는 결정은, 주도적인 국가 모델(보수파와 자유파가 연합하여 수호하려는 국민국가)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기관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한 적이 거의 없던 사회운동세력, 좌파 정당, 원주민 대표가 집단적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또한 이러한 변화를 유도해낸 방식(통일 협정, pacto de Unidad)에서 본질적으로 혁신적이다.

볼리비아는 전체 인구의 65퍼센트가 원주민이다. 그러나 원주민의 문화 정체성, 정치 조직, 경제사회 구조는 마지못해 인정하는 정도였는데, 이마저도 식민 국가의 지배 문화를 답습한 제도적 틀에 갇혀 있었다. 지배 권력의 구조를 문제 삼는 안전을, 그리고 사회운동, 농민, 노동조합, 시민사회조직, 도시부문 운동이 90년대부터 구체화해온 주요 안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변화 과정에서 식민 유산과 신식민화의 맥락을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다(Zega da C. 2010: 310). 다시 말해서, 스페인의 5백년 식민화 이후 내적 식민주의(아니발 카하노의 용어) 메커니즘을 통해 재생산된 일종의 장기적 집단 기억(Rivera Cusicanqui 1983)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이 작용한 결과, 대다수 인구를 차지하는 원주민이 정치·사회·경제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2) 보아벤투라 데 소우자 상투스(Boaventura de Sousa Santos)는 볼리비아에서 전개되는 과정에는 다섯 가지 새로운 요소가 있다고 본다. 첫째, 새로운 제도로써 다민족성이다. 둘째, 새로운 법률성으로서 다원주의이다. 셋째, 새로운 영토성으로서 비대칭적 자율이다. 넷째, 새로운 정치 체제로써 상호문화적 민주주의이다. 다섯째는 마을, 공동체, 민족의 개별적이고 공동체적인 새로운 주체성이다(Santos 2010, 57).

볼리비아에서 법률적 자유주의는, 민족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성격의 1952년 혁명에서 문화적·정치적 동질화라는 강령으로 도입되었다. 그 당시까지 보통선거는 실시되지 않았고, 원주민은 국가 운영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 1952년 혁명의 성공으로 광산 국유화 조치가 농지개혁으로 이어졌고, 군대는 민병대로 대체하여 보수적인 가치나 이익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원주민은 투표와 공채 등의 시민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원주민 정체성을 민중(pueblo)과 농민 범주로 대체했고, 원주민의 관습, 문화, 생활 방식을 식민적인 백인 소수 문화로 흡수하고 중화시켜, 결과적으로 배제하는 꼴이 되었다.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와 민영화는, 대의민주주의와 추상적 다문화주의의 관점에 근거한 지극히 형식적인 조치로 볼리비아의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재화와 용역의 민영화에 지나지 않았기에 갈등만 양산하여 때 이른 재앙을 초래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저항운동(토지·존엄·생명을 위한 행진, 2000년 코차밤바의 물 전쟁, 2003년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사회주의운동당의 대표성을 부각시킨 가스 전쟁)에는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요소가 얹혀 있는데, 차츰 권리회복 요구로 발전하여, 국가 자체를(1994년에 개정된 헌법에는 다종족적이고 다문화적인 요소가 포함되었지만 피상적이고 불충분했다) 문제 삼았다(Zegada C. 2010: 313).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 신식민주의, 최근의 신자유주의 기억이 맞물리면서(Zegada C. 2010: 312) 국가를 다시 정의하고, 나아가 국가 재건과 21세기적인 집단 정체성을 재정의한다는 맥락에서 신헌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II. 일원주의 헌법의 위기와 다원주의 헌법의 등장

페르난데스 노게라(Fernández Noguera)는 새로 등장한 다민족사회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법사회학을 이용하여 미국과 프랑스의 경향을 비교 분석했다. 미국의 경향은 주체를 현실의 수용자로 간주한 반면, 프랑스의 경향은 자기 전유(autoapropiación), 집진적 동화, 참여라는 개념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한다고 여긴다.

비판사회학은 프랑스 경향에 근거하여, 의미를 재전유하여 새로운 합의와 제도 형성을 위해 확산할 때 발생하는 사회 형성 과정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주지 하듯이, 볼리비아는 매우 진귀한 (제도적 단절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의미에서 진귀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순간에 사회는 역사를 장악하고 있으며, 새로운 요소로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된다.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에보 모랄레스)이 당선되기 훨씬 전부터 볼리비아의 원주민 공동체와 원주민 민족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역사적 주체의 조건을 재전유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에보 모랄레스가 원주민 지도자로 부상하기 수년 전부터 볼리비아에서 투쟁은 점차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원주민 인구의 다양성을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자유주의 국가 모델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볼리비아 신헌법은 원주민과 원주민의 집단적 권리 보장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볼리비아 사회 전체의 개인적이고 집단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은 21세기 벽두에 상호문화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기본권을(이전에도 헌법 초안에 기본권으로 삽입되었으나 결국에는 삭제되었다) 도입한 선구적인 문헌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규정이 매우 과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헌법은 정치적 합의의 결과물로, 제정할 때는 상이한 의견을 절충해야 하기 때문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볼리비아 헌법은 발전주의

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모델, 공동체적 모델, 다민족주의적 모델이라는 세 가지 상이한 모델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그 미래 역시 긴장과 갈등 속에 전개될 것인데, 특히 원주민 권리 보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반달 지역³⁾ 백인 엘리트의 지속적인 저항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⁴⁾ 법사회학 방법으로 해석해도, 현행 자유주의 국가의 법 일원주의는 식민화 순간부터 일련의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식민적·신식민적 형태를 넘어선 사회에는 그와는 상이한 조직이나 관계가 존재한다. 현재의 지배적인 법체계는 기존 권력이 정상적이고 신성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실은 볼리비아 사회를 삼극화(三極化)시킨 책임이 있다. 즉, 지배적인 사유화 논리로 혜택을 받는 부문, 포섭과 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부문, 수 세기에 걸쳐 주변부이던 수많은 다른 부문으로 볼리비아 사회를 분리시켜버린 것이다.

이제 볼리비아는 다국민국가라는 합의가 도출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원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는 법다원주의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에서는 공동체적 규범, 사회적 행위의 규약, 민중 경제와 의회민주주의의 규범을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 법률적인 것의 구성, 개인의 권위 행사, '원주민 정의(正義)'라는 사법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력, 규범의 적용 등과 같은 보다 복잡한 단계의 법률적 영역에서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권위의 규칙과 의미를 적시해야 한다.

이전의 지배적인 모델은, 비가시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국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공식 사회가 다른 사회를 배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의미에

3) 반달 지역이란 에보 모랄레스 정권에 반대하는 산타 크루스 주와 주변 지방의 모양이 반달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옮긴이.

4) 보아벤투라 데 소우자 상투스에 따르면, 보수주의적 우파는 신헌법의 승인을 통해 달성한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맹목이 존재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승리를 기념한 이들은 진보주의 세력이었고, 승인된 최종안에서 도입된 보수주의적 변화를 의식하지는 못한 민중 단체였다"(Santos 2010, 60).

서) 또 하나의 사법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은폐되고 배제된 주체가 역사적 의미를 재전유한다는 것은 다원적이고 다양한 현실을 직시한다는 뜻이다.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 사회적 불의와 억압에 대한 인식,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에 참여하려는 열망은, 사회적 틀이 단일한 동시에 다원적이어야 한다는 의식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리비아의 헌법은 대안적 기획인데, 이를 가리켜 볼크메르는 실천에 기반한 이론과 사실에 기반한 규범에서 출발한 공동체 참여권이라고 명명하였다(Wolkmer, 2002; 2003).

볼리비아의 경험에서 새로운 측면은 추상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주체를 새롭고 역사적이고 집단적인 참여 주체로 대체함에 따라 새로운 권리 주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공적 영역이 참여적으로 재정비되며 앞서 언급한 일련의 과정이 생겨났다는 것이다(Noguera Fernández, 2008: 42).

물론 상이한 패러다임으로 조직된 사회에서 다원주의적 해결 방안을 실천한다는 것은 원주민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재판관, 행정부 구성원, 국가 차원의 법과 규범의 제정자이자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율적 체제의 감시자로서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법다원주의 조항의 헌법 도입, 공동체의 권력 참여권 등장 역시 볼리비아 다국민국가 형성 과정의 새로운 측면이다(Noguera Fernández, 2008: 43).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이뤄졌으며, 따라서 국가를 재조직하는 순간에 헌법이 막대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아마도 전 세계 헌법학자들이 볼리비아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의 말에 따르면, 볼리비아에서 지지하고 옹호하는 민주주의는 “수백 년 된 자유주의적, 절차적, 도구적 관점을 극복하는 것이며, 개인의 독점, 물질적 결핍, 위계적인 명령계통, 사유화에서의 제한, 다시 말해 자본주

의 질서를 구성하는 지배적인 요소를 전복하려는 사회 투쟁을 통해 재창조된 사회에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García Linera 2010: 11-18). 재정의된 민주주의의 틀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의 대의 민주주의 구조를 대부분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동시에 볼리비아 원주민 고유의 공동체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공존하게 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변화는 민주주의와 적극적 권리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지만 그 수혜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의와 의사결정 영역에서도 새로운 처방과 해결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의미이다.

헌법의 재발견은, 권리를 규정하는 객관적 척도라는 건축물의 초석이라고 노게라 페르난데스는 말한다(Noguera Fernández, 2008). 이는 클레메르손 메를린 클레베(Clèmerson Merlin Clève)가 새로운 헌법적 권리라고 부르는 것으로, 정치적 행위와 사회운동이 결합된 것이다.

III. 다양성의 입헌화(constitucionalización)

볼리비아에서 규범 변화의 정점은 헌법안의 가결이었다. 이 헌법은 중요한 혁신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이전 헌법과 확실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관심사는 공동체 모델과 형식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델의 유사점, 그러한 유사점을 드러내는 조치, 마지막으로 몇몇 모순과 메타담론(metadiscurso)을 밝혀내는 것이다.

법원(法源)에 대한 위계적 관점에서 보면 다원주의가 들어설 여지가 있다. 법의 위계와 독점이라는 관념을 폐기하고, 이를 헌법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회베를레(P. Häberle)가 헌정국가

(Verfassungsstaat)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Noguera Fernández 2008: 49-50).

노게라 페르난데스는 볼리비아가 지속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면 보편적인 사회정치적 타당성과 동부지역의 자치권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Noguera Fernandez, 2008: 55-62).

완벽한 규칙과 규범을 갖춘 헌법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인데, 이 경우 헌법이 매우 장황하고 방대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볼리비아가 제헌을 통해 변혁의 동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체와 경제적 특권층 사이에, 새로운 주체와 볼리비아 전체 사회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들 간에 지속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칙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신헌법은 사회적·경제적 분배 정의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권리는 여타 국가의 민주적 헌법에서는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신헌법에는 생명, 신체 보전, 식량, 물, 주거지, 교육, 보건 등의 권리가 총체적으로 포괄되어 있으며, 즉각적인 강제력으로 보호받을 기본권, 다시 말해서 암파로영장(recurso de amparo)으로 보호받고, 헌법재판소에 소청으로(적무집행영장) 보호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헌법 138조는 비상사태에서도 이러한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볼리비아 신헌법은 경직성(다른 헌법 조항이 작동할 때조차도 철회할 수 없는 원칙과 권리)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보장(하위 법령에 맞서 부과할 수 있는 헌법적 원칙과 규범)과 직접 적용(헌법은 국가에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개별적 단위들에서도 적용된다는 두 가지 의미에서)을 모두 고려했다. 재판관은 누구나 실제 헌법 조항뿐만 아니라 원칙논리도 적용할 수 있는 헌법이다(Noguera Fernández 2008: 56 y ss).

IV. 정치적 기준으로서 헌법의 등장

볼리비아는 헌법을 새로운 국가의 기본 골격으로 삼아 변화를 이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헌법은 규범과 원칙을 통해 국가 기관과 그 밖의 영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걸러내고 감소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사안을 이끌어가는 힘을 갖는다(마땅히 그래야 한다).

헌법은 집단적 주체의 권한 강화라는 목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혁신을 이루어냈으며, 노게라 페르난데스가 ‘역동적인 헌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켜왔다. 신헌법은 정치적·행정적으로 분권화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고, ‘원주민·선주민·농민’ 영토의 자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원주민 공동체 대표가 공공기관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공공 업무에서 자치를 실천하도록 보장하고 있다(Noguera Fernández 2008).

헌법적 권리와 관련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안 가운데 하나는 상호문화적 협의의 모델인데, 신헌법의 틀 내에서 볼리비아 국가의 실질적인 복수성을 대변하고 권력의 여러 심급에 접근하는 것이다. 다수의 종족 집단, 그리고 이런 종족 집단의 영토와 삶 관리 모델의 다양성을 고려하면(헌법 제5조 1항은 볼리비아의 원주민·선주민 민족의 언어와 스페인어를 비롯해 총 37개의 공용어를 인정하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하나의 대의·협의 모델을 상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유럽과 앵글로색슨(롤스, 하버마스, 밀의 모델)의 헌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각자의 이론에 의거하여 여러 갈래의 답변을 제시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볼리비아 다국민국가의 경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새로운 역사적 경험이라는 실험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신헌법이 원주민 다양성을 정의함으로써 상이한 세계관 사이의 선험적인 평등을 확립하려고(이들 세계관 모두가 논의 대상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문화

와 인식을 표현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공동체적 민주주의의 사례, 즉 헌법의 여러 조항에 나타나는 아이유(ayllu)⁵⁾의 사례이다. 아이유는 개인주의 논리보다는 공동체 논리에 근거하며, 지방마다 다양한 특징을 지닌다. 또한 순환 보직, 직무 수행의 책임성, 특권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 인식하는 권위, 집단적 의사결정의 최고 기관인 회의를 통한 협의적 합의, 책무성(accountability)과 사회통제 체계, 통수권 철회, 의사결정과 대표단 통제를 위한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보장 등과 같은 요소를 공유한다(Zegada C. 2010: 319).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다양성을 헌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독점을 깨뜨리는 것이자 실제 적용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모순과 공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볼리비아 헌법적 권리의 새로운 모델에 관한 연구는 추상적인 일반 이론화가 매우 곤란하다.

볼리비아의 헌법주의 신국가 기획은 역사가 일천하므로, 아직은 그 결과, 난점, 오류, 성공 여부를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존재이던 대다수 인구가 법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되고, 국가 기구가 이들의 관심을 대변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는 성공했다. 볼리비아의 다민족주의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내에 존재하는 각 주(州), 지역, 주민(또는 민족)의 자율과 자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 바로 이런 점이 해방적 신헌법주의의 근본적이자 고무적인 특징이다.

— 강정원 옮김

원제와 출처

"Contribuciones de la experiencia boliviana al debate de los límites al modelo democrático liberal",
Crítica y Emancipación, N° 6, segundo semestre 2011, pp. 51-64.

5) 잉카 사회의 조직 기반으로, 가족이 다스리는 소규모 토지 구역을 일컫는다.

참고문헌

- Carducci, M.(2011), “Apuntes del III Seminario Internacional sobre Teoría Crítica de los Derechos Humanos. La Jurisprudencia de los tribunales internacionales. Avances en material de derechos humanos”, Programa Master-Doctorado Oficial UE en Derechos Humanos, Interculturalidad y Desarrollo UNIA-UPO, Sevilla, 18-19 de enero.
- García Linera, A.(2010), *Miradas. Nuevo Texto Constitucional*, La Paz: Universidad Mayor de San Andrés.
- Gargarella, R.(2010), “El Nuevo constitucionalismo latinoamericano. Algunas reflexiones preliminares” en *Crítica y Emancipación* (Buenos Aires: CLACSO) Año II. No 3, primer semester.
- Haberle, P.(2003), *El Estado constitucional*, México DF: UNAM.
- Noguera Fernández, A.(2008), *Constitución, plurinacionalidad y pluralism jurídico en Bolivia*, La Paz: Oxfam Gran Bretaña.
- Quijano, Aníbal(1992), “Colonialidad y modernidad/racionalidad” en *Perú Indígena* (Lima) Vol. 13, No 29.
- Rivera Cusicanqui, S.(1983), “Democracia liberal y democracia de ayllu” en Miranda Pacheco, M.(comp.) *Bolivia en la hora de su modernización*, México DF: UNAM.
- Santos, Boaventura de Sousa. 2010. *Refundación del Estado en América Latina. Perspectivas desde una epistemología del sur*, Buenos Aires: Antropofagia.
- Wolkmer, A. C. 2002. *Introducción al pensamiento jurídico crítico*, Sao Paulo: Saraíva.
- Wolkmer, A. C. 2003. *Pluralismo jurídico: Nuevo marco emancipatorio en América Latina* (Bogotá: ILSA).
En <http://ilsa.org.co:81/biblioteca/dwnlds/eclvs/eclvs03/eclvs03-11.pdf>
- Zegada C., M. T. 2010. “Elementos para pensar la reconfiguración del campo político boliviano” en *Crítica y Emancipación* (Buenos Aires: CLACSO) Año II, No 3, primer semester.